

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」 일부개정 조례안



성 북 구
(여성가족과)

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25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22. 9.

제출자 : 성북구청장

1. 제안이유

상위법 개정 등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시 남녀 성별을 고려하고 인원을 확대하여 위원회 운영을 보다 안정적으로 하고,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의 조정 사유를 명확히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 개정(안 제4조)

- (현행)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 ⇒ (개정)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

나.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 조정에 관한 규정 개정(안 제14조)

- (현행) 다만,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구에 기부채납 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자는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재위탁 사항을 협약 내용을 기준으로 당사자와 협의하여 진행한다. ⇒ (개정)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.

1. 원장의 위탁 계약 가능 기간이 보조금 지급 상한 연령으로부터 5년 미만인 경우

2. 무상사용임대차계약의 잔여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영유아보육법」 제6조(보육정책위원회)

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 제6조(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)

「영유아보육법」 제24조(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)

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 제24조2(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 기준)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협의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: 2022. 7. 28. ~ 2022. 8. 17.

2) 제출의견 : 없음

3) 신·구 조문대비표 : 별첨

4) 비용추계 등 자료 :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미첨부

5) 부패/성별/아동/인권 영향평가

- 부패영향평가 결과 : 원안동의

- 성별영향평가 결과 : 원안동의

- 아동영향평가 결과 : 원안동의

- 인권영향평가 결과 : 검토의견

구분	권고안	반영 여부	미반영사유(개선안 포함)
인권 영향 평가	“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 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이 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 별을 고려하여 구성“에 → (권고안) 청년할당제를 적 용하여 청년을 10%~20% 위원에 넣을 수 있도록 조항 에 명기하기 바람.	미반영	현재 보육정책위원의 구성은 보 호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, 보 육전문가, 관계공무원, 어린이집 원장, 보육교사 대표로 규정하고 있어, 실질적으로 청년(19세 이 상 34세 이하)의 위원 자격 요 건 충족이 어려워 참여가 저조 할 수 밖에 없음에 따라 현 조례 개정안에서는 원안을 유지하고 점진적으로 검토하고자 함.

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15명 이내로”를 “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”로 한다.

제14조제1항 중 “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구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자는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재위탁 사항을 협약 내용을 기준으로 당사자와 협의하여 진행한다.”를 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.

1. 원장의 위탁 계약 가능 기간이 정부의 보조금 지급 상한 연령으로부터 5년 미만인 경우 2. 무상사용임대차계약의 잔여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<u>15명 이내로</u> 구성한다. ② ~ ④ (생 략)	제4조(위원회의 구성) ① ----- ----- ----- <u>20명 이내의 위원</u> <u>으로 성별을 고려하여</u> -----.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14조(위탁기간) 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, 위 탁기간 만료 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모집하거나 재위탁할 수 있다. 다만, <u>국공립어린이집</u> <u>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</u> <u>구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</u> <u>사용하게 하는 자는 위 조항에도</u> <u>불구하고 재위탁 사항을 협약 내</u> <u>용을 기준으로 당사자와 협의하</u> <u>여 진행한다.</u> ② (생 략)	제14조(위탁기간) ①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다</u> <u>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</u> <u>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하</u> <u>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.</u> <u>1. 원장의 위탁 계약 가능 기간이</u> <u>정부의 보조금 지급 상한 연령으</u> <u>로부터 5년 미만인 경우</u> <u>2. 무상사용임대차계약의 잔여 기</u> <u>간이 5년 미만인 경우</u> ②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보육정책위원회 정원 확대에 의한 위원 신규 위촉 시 수당지급액 변동 발생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 제2항 제1호

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우리 구 「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인 경우로서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

4. 작성자

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장 강영숙